

29

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.



축산분야 'ICT 융복합 지원사업'을 통해 스마트팜 장치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**환경관리** : 축사 내부(온도, 습도, 정전, 화재), 외부(온도, 습도, 풍향, 풍속), CCTV 등의 정보 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
- **사양관리** : 사료빈 관리기, 자동급이기,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
- **경영관리** : 생산관리, 경영관리,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

■ 사업대상자

-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 등록(사슴)을 한 자(축산법 제 22조)
 - * 다만,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,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
 - *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 조정(0.05㎡/마리 → 0.075)한 농가에 한함
 - * 양계(30,000수, 단 종계는 10,000수)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 가능하나 사육 규모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'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'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

■ 지원자격

-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·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경영체
- 사업 완료 이후 농정원의 '축산 빅데이터 플랫폼'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

■ 우선지원 조건

-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
- ICT 약취측정장비(축산환경관리원 연계) 설치한 자(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 예정인 자 포함)
- 약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, 약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

우송과 번식
중지보존과 개량
사육관리
환경관리
항생제대체제의 이용
계사시설과 환경관리
특수관리
생산물의 품질관리
위생과 질병
경영관리

계사시설과 환경관리

■ 사업을 신청하려면?

-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신청

■ 사업절차는?

-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예비 신청
- 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
 - * 컨설팅은 전담기관(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)에서 수행하고 국고 100%으로 지원
- 지자체는 자체 선정평가(지침, 사업계획서, 컨설팅 결과 등 종합 검토)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
- 선정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ICT 장비업체(장비품목 포함)와 계약하여 사업 추진

■ 지원 형태와 범위

- 국고 보조금 30%, 자부담 20%, 융자 50%
- 사업비 상한액은 15억 원